

엔지니어링대학원 학생조교 운영세칙

제정 2014.12. 1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엔지니어링대학원(이하 ‘대학원’ 이라 한다) 학생조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학생조교의 임용) 대학원에서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생을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학생조교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한다.

1. 학생교육조교수당(Teaching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. 단 일반과정 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 최소 한 학기 이상은 조교수당을 받지 않고 교육조교활동을 한다.
2. 학생연구조교수당(Research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.
3. 학생행정조교수당(Staff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행정업무 지원(근로포함)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.

제4조(학생조교의 배정) 학생교육조교의 배정은 대학원 각 교과목에서의 조교 소요(학생교육조교) 및 교수들의 연구 업무 부담 정도(학생연구조교)에 따라 대학원장이 배정한다.

제5조(학생조교수당 지급) ① 학생조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② 학생연구조교수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지급하되,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학기 중 자퇴,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 하지 않고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해당 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) ① 초과등록자라 함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.

② 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은 교비로 지원 할 수 없다. 다만, 교비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학생조교의 기타 재정지원의 수혜) ① 대학원생은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동시에 내·외부로부터 기타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② 다만,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이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8조(준용)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부로 제정, 시행한다.